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고 일 준

#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고, 감면대상 요건완화, 감면시점 조정, 용어 정비 등 그동안 도세감면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농협중앙회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안제9조의2 신설)

-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 종전에는 「충청북도 도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음.

나. 1가구1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안 제12조제3항)

- 40㎡이하 1억원 미만 1가구1주택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에 있어 60세이상·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할 경우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다. 주택재개발사업 감면대상 판단시점 조정(안 제14조제3호)

- 원주민의 주거안정 취지에 맞게 감면대상 판단시점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앞당겨 조정

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면대상 판단시점 조정(안 제15조제2호)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절차변경에 따라 감면대상 판단시점을 종전의 개선계획 수립과 상응하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로 조정

마. 지방공사 감면대상 추가(안 제19조제1항)

- 지방공사의 구분 지상권설정등기 등록세 면제 추가(지하철공사에 한함)

바. 혁신도시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안 제30조의3 신설)

- 혁신도시 이주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신설

※ 85㎡이하 면제, 85~102㎡ 75% 경감, 102~135㎡ 62.5% 경감

## 4. 검토의견

### 가. 개정취지

개정조례안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감면대상 확대, 감면시점 조정, 용어 정비 등 그동안 도세감면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이 취지임.

### 나. 감면내용

1. 농협중앙회 구판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안 제9조의2 신설)

- (1) 사유 : 산재되어 있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로 일원화
- (2) 내용 : 충청북도 도세조례 제21조를 삭제하고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제9조의2 신설

2.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1가구1주택 감면대상 확대(안 제12조제3항)
  - (1) 사유 : 실제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도 혜택부여
  - (2) 내용 :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인 ⇒ 부양하고 있는 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면 판단시점 조정(안 제14조제3호, 안 제15조제2호)
  - (1) 사유 :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투자목적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므로 원주민의 주거안정 취지에 맞게 조정
  - (2) 내용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최초 시행 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4.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30조의3 신설)
  - (1) 사유 : 혁신도시 이주공공기관 직원 주거안정
  - (2) 대상 : 이전공공기관 직원이 충청북도내에 취득하는 1가구1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 (3) 감면세액 : 전용면적 기준
    - 85㎡이하 면제, 85㎡초과 102㎡이하 75% 경감, 102㎡ 초과 135㎡이하 62.5% 경감

#### 다. 종합의견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에는 이견이 없으나, 조례개정문안은 「충청북도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겠음.

기타의견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자치단체의 재정정책과 일반

행정정책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야함.

그러나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지방세법, 도세감면조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근거규정이 산재되어 있어 체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 감면규정의 명확성 미확보, 그리고 감면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전국 통일성 확보를 이유로 중앙정부(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해 운영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제약을 받고 있어 지방세 감면체계의 일원화 및 자치시대에 걸맞는 운영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음.

붙임 :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